



의안번호

제149호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복지국장
제출연월일	2022. 10. 6.

예산실장 심사필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49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2.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미개정 사항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 및 운영 정비(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 (안 제5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 기준 정비(안 제12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정비(제32조)
- 대부료 등의 납기 정비(안 제35조)

나.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등 개정

다. 그밖에 용어순화가 필요한 사항 정비 등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조문 제목 및 각 조항 변경  
(안 제16조, 안 제21조~ 안 제25조의2 등)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건물대부료 계산기준”으로 조문 제목 변경 및 각 조항의 “산출”을 “계산”으로 변경(안 제3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8. ~ 2022. 9. 2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세정과(041-635-3642)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공유재산관리·처분”을 “공유재산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를 “법 제16조”로, “이하로”를 “이하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처리하기”를 “관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4호 중 “있다고 인정되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을 “「논산시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4.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7조 중 “영 제52조”를 “법 제92조”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있다고 인정되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시작”을 “개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지 아니하고”를 “따르지 않고”로, “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있을 때에는 규칙이”를 “있으면 규칙에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를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하려”를 “사용허가 하려”로, “사용·수익 허가”을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을 “사용허가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를 “사용허”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제25조부터 제37조”를 “제24조부터 제27조”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산출한”을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있다고 인정되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건물대부료 계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용”을 “전용(專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용면적산출”을 “전용(專用)면적 계산”으로, “의한”을 “따라”로, “산출”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용”을 “전용(專用)”으로, “산출”을 “계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출한다”를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한 공용면적 산출”을 “따라 공용면적 계산”으로, “산출할”을 “계산할”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산출기준”을 “계산기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5퍼센트”를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

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채산을 대부한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출한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를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제8호까지의 규정에”를 “제8호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시장”으로, “공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산시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논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회 계 과 장	김 영 기
	재 산 관 리 팀 장	곽 상 근
	담 당 자	홍 옥 란 (746-5503)



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

-----  
-----.

② -----  
-----  
-----  
-----  
----- 호선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하며, 한 차례  
만 ----. -----  
-----.

⑥ (현행과 같음)

⑦ ----- 관리하기 -  
-----  
-----  
-----.

⑧ -----  
-----  
-----  
-----  
-----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⑩ (생략)

⑪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⑬ (생략)

⑭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심의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

----- 대신-----

-----.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있는 -----

⑫·⑬ (현행과 같음)

⑭ -----

-----

-----

----- 안된

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  
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취득·처분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  
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5.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  
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  
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  
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8. -- 밖에 -----  
-----  
-----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논산시 건축 조례」 제35조  
에 따라 -----  
-----

3. (현행과 같음)

4. -----  
-----

<삭 제>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고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이고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생략)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 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 92조-----  
-----  
-----  
-----.

제8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있  
는 -----

2. ~ 5. (생략)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2. ~ 5. (현행과 같음)

④ -----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  
-----  
-----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개시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따르지 않고 -----  
-----  
----- 재산관리관은 -----  
-----.

② -----  
----- 있으면 규칙에서 -----  
-----  
-----.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②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계과장과 협의 후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수익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사용허가대상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 ① -----  
-----  
----- 사용허가 하려 -----  
-----  
-----  
----- 사용허가 -----  
-----

② ----- 사  
용허가 하려면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
6. 사용허가-----  
-----

7. (생 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 사용허가부-----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사용허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 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효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수익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⑤ ----- 따라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사용허가----- 이 조제 제 24조부터 제27조-----  
--.

제25조의2(수익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  
-----  
-- 따른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  
--

5.·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2. (현행과 같음)

3. -----  
-----제19조제1항에 따라 -----  
-----  
-----  
-----



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

⑤ -----  
-----  
-----  
----- 있는  
-----  
-----  
-----.

제31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

----- 계산-----  
-----  
-----.

② -----  
-----  
----- 전용(專用)-----  
-----  
----- 전용(專用)면적  
계산-----  
따라 -----  
----- 계산-----  
-----  
-----.

④ -----  
-----  
-----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6과 같이 산출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전용(專用)-----

----- 계산-----

----- 계산한

다.

⑤ -----

----- 따라 공

용면적 계산-----

----- 계산할 ---

----- 계산기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 사용허가-----

1. -----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

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아.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

조-----  
-----  
-----  
-----  
-----  
-----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  
100분의 75 -----.

가. ~ 바. (현행과 같음)

3. -----  
-----  
100분의 50 -----.

가. ~ 아.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 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 제25호 또는 제26호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신 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 수익 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일반 재산을 대부한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  
----- 사용허가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  
-----  
----- 계  
산한다.

③ -----  
----- 사용  
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  
-----  
-----  
-----  
-----  
-----  
-----  
-----  
----- 뺀 -----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삭 제>

<삭 제>

③ ----- 제2항에도 -----  
----- 그 밖에 -----  
-----  
-----  
-----  
-----  
-----  
-----  
-----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  
-----  
-----  
-----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생략)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이자율은 제38조제1항을 적용하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따라 -----  
-----  
-----  
-----

4. (현행과 같음)

5. -----  
-----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  
한 국가보훈대상자-----

③ -----  
-----  
-----  
-----

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채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

- 3.·4. (생략)
- ④·⑤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제
- 2. ~ 10. (생략)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  
-----.

- 1. (현행과 같음)
- 2. ----- 따라 -----  
-----  
-----  
-----  
-----  
-----

- 3.·4.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따라 -----  
-----  
-----.

- 2. ~ 10. (현행과 같음)

제50조(정의) ----- 그  
밖에 -----  
-----  
-----.

제52조(사용허가) -----  
----- 따라 -----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호까지에 따라 -----  
-----  
-----.  
-----  
-----.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  
-----  
-----  
-----  
----- 시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회계과장 김 영 기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 4. 20.>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4., 2017. 11. 28.>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을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본조신설 2018. 12. 31.]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sup>⑫</sup>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8., 2020. 8. 5., 2021. 6. 22.>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6. 11., 2016. 7. 28., 2021. 6. 22.>